



우리동네
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

- 쉽고 편리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



	의료광고 관련 FAQ	11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15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3



✓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 ?

의료광고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광고는 누가하나요 ?

의료인 · 의료기관 · 의료법인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한의사 · 한의원 · 한방병원 ·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 의료광고는 꼭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 되어,
사전심의 대상인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요?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 하시면 됩니다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참고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

대상매체	세부매체
신문	일반(특수)일간신문, 일반(특수)주간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현수막	천, 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하여 건물 벽이나 지주, 게시시설에 표시
전단지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벽보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광판	외부 또는 외부로 향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표시하거나 게시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자동차 및 도시철도차량, 기선, 범선, 항공기) 내·외부에 붙이거나 직접 도료(코팅 처리)로 표시하는 광고물
인터넷매체	인터넷 뉴스서비스 : ytn.co.kr, gomtv.com 등 방송사운영 홈페이지 : kbs.co.kr, imbc.com 등 인터넷 라디오 : KBS콩, MBC미니, SBS고릴라 등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사이트
SNS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SNS :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참고 인터넷매체 예시

● 검색어(키워드) 광고

 <https://ad.akom.org> (광고)

비만, □□ 한의원

강서구 가양동 위치 / 비만, 추나요법, 아간진료 * 한 00000

● 브랜드검색 광고

○○○한의원 홈페이지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

비수술 적주관절질환치료,
자동차보험진료, 추나치료, 보약 처방

비수술치료 교통사고 한약치방

예약 **위치** **의료진 소개**

진료예약 찾아오시는길 의료진소개

● 플레이스 광고

PC 소재 미리보기

광고 ○○○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비만 성장장애

진료중 - 10:00 - 20:30

100m | 서울 강서구 가양동

모바일 소재 미리보기

광고 ○○○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비만 성장장애

진료중 - 10:00 - 20:30

100m | 서울 강서구 가양동

● 파워컨텐츠 광고

PC 소재 미리보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 한의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의무화, 사전 심의대상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유효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소재 미리보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 한의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의무화, 사전 심의대상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유효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

 **중중중 한원에서 디스크 치료 합니다.**

가양동 · 지역광고

홈 동네생활 내 근처 채팅 나의 알람

추나요법 @@@한의원

강서구 가양동 위치, 응급진료

● SNS 광고

중중중한의원

중상을 보고 환인을 파악하여 세밀하게 진료합니다. 증상별 원인별 개인별 맞춤 치료 합니다.

중중중한의원

원내 당진에서 경성껏 조제한 한약을 처방합니다.

개인별 맞춤 한약 처방

침치료 · 뜸, 부항

초회 25만원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의료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경우
사전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면허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기관이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예시]

한방내과전문의 홍길동원장 진료

진료시간 am 09:00~ pm 19:00

☎ 02-2657-5030 <https://ad.akom.org> 00 한의원



심의없이 광고 게재 가능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광고 매체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필 번호없이 광고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광고 계획 시 **매체사의 등록 기준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의료광고 심의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의료광고 심의신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d.akom.org>)에서
 접수부터 심의결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한의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한의사·한의원·한방병원·한의학가 개설한 요양병원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검색



대한한의사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Physicians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정보 | 심의신청 | 알림마당 | 열린마당

채널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대한한의사협회

마이페이지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은?

의료광고 제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이하 "의사"라 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제5조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인 하시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복제간행물, 방송, 전보, 전신, 팩스, 고등시책, 고등수업, 전광판 등으로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밀하기

심의신청

심의신청서 구비서류는?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의 의료기관 개설 제1호를 표시하는 신고증

구비서류 | 관련법규

승인광고확인

승인광고번호가 부여된 것에 대하여 광고 조사가 가능합니다.

백로그가기

심의재심의 신청

60

사후통보하기

60

심지가 종료되어 심의결과(승인)가 부여된 광고에 대하여 심의의 불합격 또는 '의료' 관련 명칭, 용어(의사) 도래한 주시, 삭제,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통보 신청에 가능합니다.

단, 사전심의로도 사항(18.9.20) 이전 신고 및 제7조(의) 등 특정 기준에 따른 사후통보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일정 안내

2024년 5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5월 18일 (목)

05월 20일 (토)

접수마감일

05월 10일 (금)

05월 24일 (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의료광고 심의문의

FAQ게시판 | Q&A게시판

공급한 정보나 의료사항이 있을 경우 FAQ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Q&A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바로그기 SERVICES

심의결과 | 심의수수료 | 이용가이드 | 사후통보

공지사항

-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주의 안내.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준 조정 관련 안내.
- 윤리적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실시 관련.
-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 유방암 의료광고 사례 및 점진적(제크리스).
- '비교' 진료비 할인광고, 관련 주의 안내.
- 인력회 불확시 등 의료광고 관련 회의를 주의안.

✓ 의료광고 심의비가 있나요 ?



심의신청 시 심의비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직권심의

- **55,000원** :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이나 소재지 및 홈페이지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
- **110,000원** : 진료내용과 같은 진료안내 등

2. 전문심의

- **110,000원** : 직권심의대상 이외 내용
- **220,000원** : 동영상광고 또는 광고 내용이 많은 경우
+α 양에 따라 할증 부과

✓ 심의 준비사항

● 접수(심의신청)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 광고시안(jpg, png 등 그림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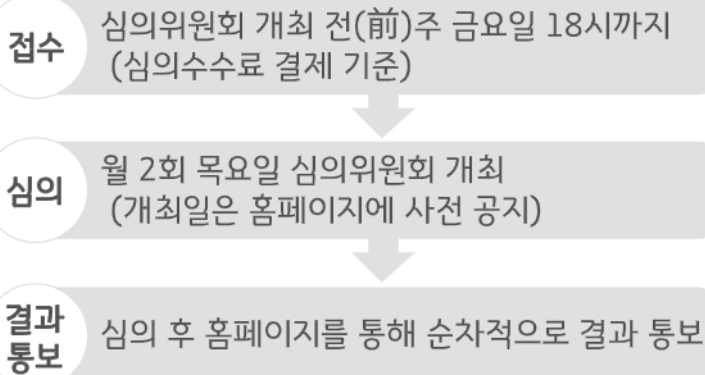
● 심의 증빙서류

1. 의료인 경력 관련
: 전문의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2. 광고내용 관련
: 공인된 근거의 의학적 증빙 서류
(인정) 교과서, 정·준학회 및 SCI급 학술지 논문, 10종 의서
(불인정) 임상실험이 아닌 동물 등을 이용한 실험논문,
소수 환자의 체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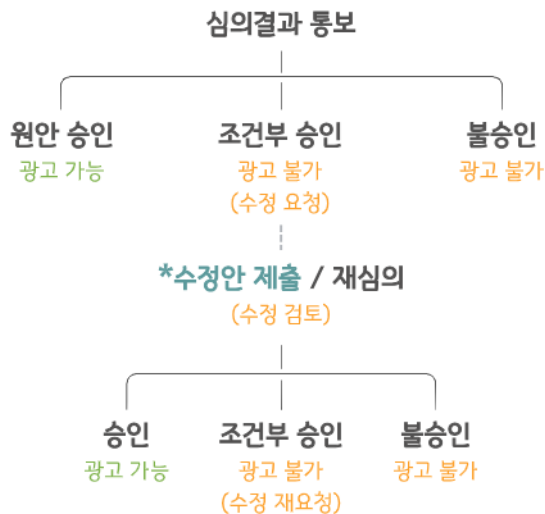
● 심의수수료

- 심의신청 후 홈페이지 내에서 납부 (가상계좌 / 카드결제)
- : 심의수수료 결제 후 심의 진행 가능

참고 심의 과정



✓ 심의결과 처리 절차



- **승인** - 원안대로 광고 허용
- **조건부승인** -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받아들여 수정 후 광고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
*수정안 제출 기한 : 2개월
- **불승인**
 - 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많거나 의료광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의료기기/의약품 광고 등)
 -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의료인 품위훼손 등)
 - 수정안 제출기한(2개월)이 만료된 광고 불허

▶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광고 유형 및 매체에 따라 심의필 번호 표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 번호 표기 방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추나요법 @@@한의원

강서구 가양동 위치, 공휴일 진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 예외사항

: 광고 영역 제한 등 매체사 기준에 따른 축약 표기 가능
(인터넷 검색어/플레이스 광고, 음성광고 등)

한00000

※ 예) 제240101-중-12345호 → 한12345

 <https://ad.akom.org> (광고)

비만, □□ 한의원

강서구 가양동 위치/비만, 추나요법, 야간진료 • 한12345



☑ 의료광고 관련 FAQ

Q 개원 준비 중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심의신청 시 ①광고 시안 ②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 증명서)이 필수 서류이나, 의료기관 ‘개원예정’ 또는 ‘이전안내 광고’의 경우 개설허가증의 대체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중 택1)를 제출하여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고 승인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필히 개설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Q 검색어(키워드) 광고는 광고 이미지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키워드 광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공지사항 2번 게시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체사의 광고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 문구를 작성하신 후 해당 미리보기 화면을 캡처(또는 사진 촬영)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 PC와 모바일 버전의 소재가 상이할 경우 개별 접수 바람

Q 네이버 파워컨텐츠는 포스팅 내용을 모두 심의 받아야 하나요?

A 현재 네이버 파워컨텐츠의 경우에는 포털 검색 시 보여지는 PC · 모바일 광고 소재에 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워드 광고와 마찬가지로 매체사의 광고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 문구를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작성하신 후 해당 화면을 캡처(또는 사진촬영)하여 이미지 파일(jpg, png)형태로 업로드 바랍니다.

※ PC와 모바일 버전이 동일하므로 통합 미리보기 이미지로 접수 바람, 포스팅(랜딩페이지) 내용은 필히 의료법령에 준하여 표기 바람

Q

심의수수료 55,000원과 110,000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심의정보-심의수수료’를 통해 심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확인 가능하며, **심의수수료 55,000원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도 표기 가능한 문구 등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한 내용에 한하며, 그 외 진료안내에 대한 사항은 110,000원에 해당합니다.**

※ <참고> 심의수수료 55,000원에 해당하는 내용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 진료시간
5.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6.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7. 주차장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9.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0. 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Q

동영상 광고는 제작된 영상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A

동영상 광고는 심의 신청 시 **해당 동영상 광고의 내용을 담은 콘티(영상 장면, 대사, 자막 등이 모두 표기된 이미지 파일) 형태(1차)**로 업로드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콘티 이미지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영상 제작을 요청하여 제출된 동영상(2차)**을 재차 심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광고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차례에 거쳐 심의가 진행되므로 심의수수료가 220,000원으로 책정되며, 광고의 양에 따라 심의수수료가 할증 부과됨

Q

심의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은 광고는 며칠 이내에 수정해야 하나요?

A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에 따른 조건부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1차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최종 결과를 받지 않은 경우 불승인 처리됩니다.

Q

의료기관 상호와 주소가 바뀌면 심의 받은 광고도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기 승인 광고에 대한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의료기관 명칭·주소·전화번호·광고모델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심의신청-사후통보'로 변경 가능합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18.9.28) 이후의 건에 한하여 심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사후통보 신청 가능함

Q

심의필번호를 받아 매체사로 광고등록 신청을 했으나 매체사의 자체 규정에 위반되어 반려될 경우에는 심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심의필번호가 부여된 기 승인 광고에 대해서는 매체사의 등록 기준으로 인해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것으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 신청 시 광고 매체사의 자체 기준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어 등록 가능한 내용을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Q

심의 받은 광고는 배경 색상과 문구 배열도 변경하면 안되나요?

A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발체·삭제·추가 등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나 디자인 변경(문구 재배치, 폰트 및 색상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광고로 보여질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함). 다만,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필히 의료법령 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료실’ 공지) 참고 바람

Q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 내부의 거울 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로서 사전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단, 벽보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외부로 이동될 경우 전단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안전하게 광고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닐 경우, 의료법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준하여 표기 바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비염 000한의원 www.000한의원.com 비염치료, 비염치료약침 특허, 특허한약 처방 감압치료란? 허리스프링치료에 공간척추교정	신의료기술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특허, ISO인증, 공간척추교정, 감압치료 등
---	--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자신있는 빠른 감량 / 당뇨병 원지는 땀! 비만과 당뇨를 한번에!! 효과 확실한 한약다이어트 너무 많이 빠져 걱정인 리뷰 내돈내산! 한약 먹고 살 뽀짝 후기(이벤트 있어요) D 000 구독자 50만명 10만의 선택, 000 한의원 오래됐는데, 오래봤는데, 대제불가, 여드름치료 TV쇼 000출연 ☆☆☆원장 한방다이어트	치료 전·후 사진 등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치료사례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완치, 해결, 부작용 없이 등) - 의료인 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치료 후기, 치료사례 등) - 치료전후 사진 게재 - 방송 출연 등
---	---

● 거짓 또는 과장하는 광고

	거짓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지정여부 확인 불가 및 사실과 다른 내용 -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과장된 문구 - 최상급 표현(최고, 최신식, 최첨단, 유일 등) -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표기 - 진료시간 또는 의료인 변경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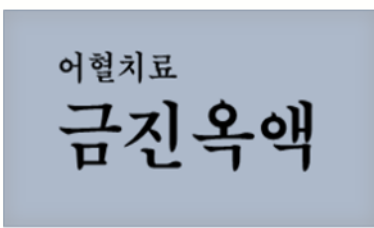
● 다른 의료인과의 진료방법 등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광고

	의료인 간 시술 및 시술방법 등의 효능·효과를 비교 / 비방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하고자 하는 시술이 타 시술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수술 없이, ○○치료보다 좋은, 항생제 없이 등
--	---

● 직접적인 시술행위, 환부사진을 표기하는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공포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술행위나 신체 부위, 환부사진 또는 이미지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시술 특정부위만을 강조하여 보기 흉하거나 해당질환에 대한 무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등
---	---

● 진료내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을 누락하는 광고

	알레르기 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의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부작용 적시 누락, 글씨 크기를 작게 하거나 배경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기
---	--

● 임의적인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또는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하이고, 아롬다이어트, 생생감비탕, 금골막침 임의적인 명칭 표기 - 근거가 불명확한 '00침', '00탕', '00요법' 등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명칭 표기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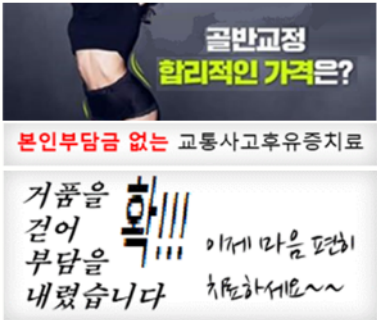
●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의 광고

	언론사 또는 출판사에 소속된 기자가 작성한 글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의료기관 주체 및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노출 및 [도움말]등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한 기사형 광고
--	---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365일 诊疗 我们支持您的春天 车祸 病房 营养 韩医 输液疗法 慢性疲劳 解酒 改善炎症 改善体力 诊疗时间 周一 ~ 周四 10:00 ~ 20:00 星 期 五 10:00 ~ 19:00 (午间时间13:00 ~ 14:30) 周六 ~ 周日 10:00 ~ 15:00 公 休 日 10:00 ~ 15:00 (周末、公休日：没有午间时间)	외국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외국인 환자유치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국제공항·무역항 등)가 아닌 곳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모든 광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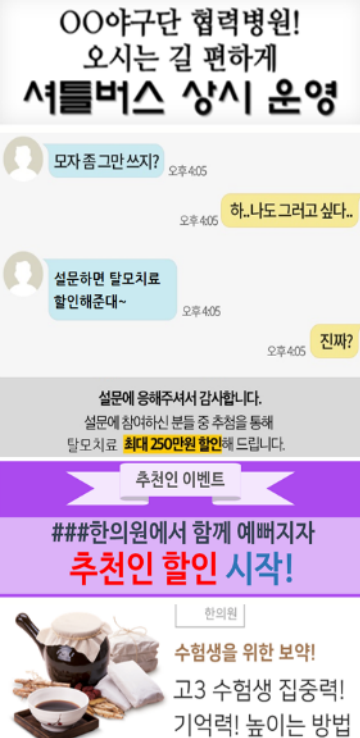
● 비급여 등 진료비를 할인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합리적인 가격, 본인부담금 없는, 부담 없는 가격, 특정 치료비용 적시 등

● 수상·인증·보증·추천하는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및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인증·보증, 수상경력, 감사장 경력을 표시하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신문사 등에서 주최한 수상경력, 정부기관 외에서 인증·보증한 사항 등
---	--

●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특정기업(회사)과 협력체결하여 관련사항 적시 - 셔틀버스 상시운영(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설문 등 이벤트를 통한 경품제공을 암시하는 광고 - 수험생(고3)처럼 특정군의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등
--	--

●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폭력·선정적인 이미지 등 - 동요 개사 및 특정 동화를 왜곡하여 표현 - 다이어터, 유지어터 등 신조어, 축약형 단어 표기 등 - 비속어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 등
--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 판매 또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처방의 효능·효과 표기 등 - 질환에 대한 치료사항인 처방이 아닌 판매목적의 공진단, 경옥고 등 - 의료기기의 단순 효능·효과 표기 등
---	--

● 입원실 등 시설을 강조하는 광고

●●●한의원
교통사고입원실운영
호텔 스위트룸 부럽지 않은 인테리어



모션베드 몸이온발생 공기청정기 다시보기+무료Wifi

교통사고 나셨어요?
무료로 내집 보다 편안한 입원실에서 치료받으세요

호텔보다 편한 프리미엄 입원실 GRAND OPEN
언제든지 입원 가능한 ●●한의원
전 객실 프리미엄 구스 소재 침구로 호텔보다 편안하게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에서 치료에 전념하세요



입원 문의 (000)0000-0000 ●●한의원

편안한 휴식을 위한 호텔식 입원시설

다시보기 서비스

개인용품 샤워실

이모션시선용 모스크 무료와 입원시설



의료와 무관한 사항을 강조하여 표기함으로써 의료광고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의료와 무관한 사항(입원실, 편의 시설 등)을 강조하여 표기
- 호텔식 프리미엄 입원실
- 모션베드, 안마의자, 태블릿PC 제공
- 완벽한 식단, 간식 제공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명령	행정처분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표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 치료 효과 오인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방법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누락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객관적인 사실 과장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 사한 내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에 게재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3조)	업무정지 1개월
거짓된 내용 표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업무정지 2개월

▶ 불법 의료광고 신고는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의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관계없이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제보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s://ad.akom.org>) [열린마당]-[신고/제보하기]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Korea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 Medical Advertising Self-Regulatory Committe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심의정보' (Review Information), '심의신청' (Review Application), '알림마당' (Notice), and '열린마당' (Open Market). The '열린마당' section has sub-links for 'FAQ', '질문과답변' (Questions and Answers), and '신고/제보하기' (Report/Complaint). The '신고/제보하기' page displays a search bar with the text '472개 (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32)' and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for '제목' (Subject) and '작성일' (Date).

● 유선 및 E-mail 신고, 제보

- TEL : 02-2657-5030, 5039
- E-mail : ad@akom.org



MEMO

MEMO

우리 동네
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

- 쉽고 편리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

해당 책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발행일 : 2024.06.26.

발행인 : 대한한의사협회

발행처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 의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

02-2657-5030,5037 <https://ad.akom.org>

우리동네
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

- 쉽고 편리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

